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9. 1. 16.

행정소방위원회

1. 수정이유

법규문서는 체제의 일관성, 명확한 용어의 표현이 요구되므로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

2. 주요내용

가.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주체가 제1항에 제시되지 않고 제2항에 제시되고 있으므로 제2항에 있는 위원회를 제1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 위원회

나. 명확한 용어표현을 위한 자구수정(안 제3조제3항)

○ 지명 ⇒ 임명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지명“를 ”임명“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②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p>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p>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	<p>제3조(구성)</p> <p>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p>